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9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20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생략) <u><신설></u>	<u>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구인광고 등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따른다.</u> ③ <u>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34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u>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¹⁾,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거짓 구인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음에도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하고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사건,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등 구직자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 모집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명단 공개 기준을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안은 명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1)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2) 아시아투데이. 절박한 구직자 두 번 울리는 ‘허위 구인광고’ 범죄 증가. 2025.2.14.보도. (최종검색일: 2025.4.2.)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구인광고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뇌물수수 등에 관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³⁾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과정에서 구직자가 위법한 사업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고 구인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이 법 제34조의 위반사항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
- 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항을 조사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어 해당 규정 위반에 따른 유죄 확정 여부 확인 및 인적사항 공개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⁴⁾ 및 「식품산업진흥법」⁵⁾ 등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겠음.

또한, 안 제34조의2제2항은 “...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구인 광고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원활한 의미 전달을 위해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명단 공개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급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으므로, 개정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범죄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 결과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